

---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 **자주하는 질문(교과목이수자)**

---

**2021. 10.**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

# 목 차

I. 공통사항 .....	1
Q1. (인정방법) 제공인력으로 자격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Q2. 저는 고시 이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증도, 발달재활서비스 경력도 없습니다.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새롭게 일할 수 있나요? .....	1
Q3. (신청방법) 자격인정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1
Q4. 자격인정 신청에서 최종 인정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	1
Q5. 교과목이수로 자격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
Q6. 법정교과목의 일부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는 방법이 있나요? .....	2
Q7. 법정교과목의 일부 과목을 추가 이수하고 싶지만 어디서 들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과목을 어디서 이수 할 수 있나요? .....	2
Q8. 대학교와 대학원의 과목이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
Q9.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학점이 3학점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2학점으로 이수 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
Q10. '장애아동의 이해'를 학교에서 전공수업으로 이수했는데, 법정교과목에서는 공 통영역의 필수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정이 안 되나요? .....	3
Q11.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과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을 통합해서 인정 받을 수 있 나요? .....	3
Q12. 석사와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	4
Q13. 필수로 표기된 과목은 모두 이수해야 하나요? .....	4
Q14. 법정교과목 중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전환교육으로 채울 수 있나요? .....	4
Q15.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원본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	4
Q16. 학교 재학 중인데 이수과목 일부만 먼저 유사교과목 심의를 신청 할 수 있나요? 4	
Q17. 대학원에서 법정교과목 이수를 다 하고 현재 수료 상태입니다. 자격인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	4
Q18. 신청서 1개로 여러 제공영역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5
Q19. 제공영역별로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나요? .....	5
Q20. 전화상담은 자격인정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나요? .....	5
Q21. 홈페이지 1:1문의에 남긴 제 문의가 '처리완료'로 되어 있는데 답변이 안보여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	5
Q22. 1차 심의 결과 인정되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럼 자격인정이 된 건가요? 5	

## **II. 제출서류 ..... 6**

- Q23. 교과목이수 자격인정에 필요한 서류로 어떤 것이 있나요? ..... 6  
Q24. 자격인정신청서, 유사교과목신청서, 개인정보보동의서는 어디에서 다운받나요? ..... 6  
Q25. 제출해야 할 서류를 발급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6개월  
    이내 발급에 해당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6  
Q26.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한 원본서류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 6  
Q27. 실습확인서의 내용은 모두 기입해야 하나요? ..... 6  
Q28. 졸업한지 오래되어 실습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꼭 실습확인서를 제출해  
    야하나요? ..... 7  
Q29. 졸업한 지 오래되어 실습기관이 폐쇄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7  
Q30.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생 등으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7  
Q3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 신청 중에 있는데, 자격인정 신청이 가능할까  
    요? ..... 7  
Q32. 대학교를 편입하였는데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 7  
Q33. 졸업한 지 오래 되어 강의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대체 강의계획서를 제출  
    해도 될까요? ..... 8  
Q34. 신청하고자 하는 영역의 교과목을 전부 이수하였지만 아직 졸업 전입니다. 최종  
    학력증명서는 어떻게 내면 될까요? ..... 8  
Q35. 교과목 이수는 다 하였으나 성적 처리가 되지 않아 성적증명서 상 표기 되지  
    않습니다. 다음 회기에 신청해야하나요? ..... 8

## **III. 실습 ..... 9**

- Q36. 인정 받고자 하는 제공영역의 실습기준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9  
Q37. 실습기준에서 장애아동의 범주는 어떻게 되나요? ..... 9  
Q38. 제가 진행한 실습이 인정되는 지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 9  
Q39. 졸업 후 실습도 인정 되나요? ..... 9  
Q40. 봉사시간도 실습으로 인정되나요? ..... 9  
Q41. 실습요건을 충족하는 실습기관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 10  
Q42. 실습지도자(슈퍼바이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10  
Q43. 미술재활영역 관련하여 실습을 하려는 기관의 실습 담당자가 미술재활관련 자  
    격증은 있지만, 슈퍼바이저 자격이 없습니다. 실습이 가능한 기관인가요? ..... 10  
Q44. 놀이심리재활영역 관련하여 실습확인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10  
Q45. 실습을 진행한 기관이 여러 곳인 경우 실습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11  
Q46. 학교 내에서 간접실습을 진행하였을 경우 실습확인서의 기관명을 어떻게 작성  
    하면 될까요? ..... 11

<b>IV. 유사교과목 .....</b>	<b>12</b>
Q47. 유사교과목 심의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	12
Q48. 이수교과목 명이 법정교과목과 한 글자가 달라요. 유사교과목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12
Q49. 유사교과목 심의 신청은 개인이 신청해야하나요? 학과에서 단체로 신청할 순 없나요? .....	12
Q50. 유사교과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전에 제가 이수한 과목이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12
Q51. 유사교과목 인정과목 조회에서 제가 졸업한 학교가 검색이 안돼요. (또는 제가 졸업한 학교는 있는데, 이수한 교과목명이 없습니다.) .....	13
Q52.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수과목을 합쳐서 한 개의 법정교과목으로 유사교과목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 개 이수과목을 여러 개 법정교과목으로 유사교과목 신청이 가능한가요? .....	13
Q53 (위 질문에 해당) 한 과목을 2학기로 나눠 들어 신청 시 성적 기입란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	13
Q54. 이전 회기 유사교과목 심의 결과 인정되지 않은 과목을 다음 회기에 재신청할 수 있을까요? .....	13
Q55. 이전 회기에 유사교과목을 신청한 과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과목을 심의신청한 과목과 다른 과목으로 바꿔서 재신청할 수 있나요? .....	13
Q56. 강의계획서에 원본대조필을 받으라는 데, 이게 어떤 건가요? .....	14
Q57. 원본대조필은 어떻게 증빙할 수 있나요? .....	14
Q58. 유사교과목 인정과목 조회되었던 과목인데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안돼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14
Q59. 유사교과목 인정과목 조회에서 인정된 과목은 유사교과목 심의 신청을 안해도 되나요? .....	15
Q60. 대학원 성적증명서 상 과목 구분이 전공필수, 전공선택과 다릅니다. 과목 구분 관계없이 인정 가능한가요? .....	15
Q61. 대학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성적증명서 상 이수한 과목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증빙하면 될까요? .....	15
Q62 대학원에서 법정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일부 과목은 대학원 이수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과목으로 이수하였습니다. 이 과목도 대학원 이수과목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15

<b>V. 온라인 신청</b> .....	16
Q63. 핸드폰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16
Q64. 자격인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인정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라고 뜹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6
Q65. 신청을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은 어떻게 하나요? .....	16
Q66. 민간 아이핀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6
Q67. 민간 아이핀 로그인이 안 됩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16
Q68. 작년에 민간 아이핀을 발급받았는데, 아이디가 없다고 합니다. ....	17
Q69. 자격인정 신청란의 최종학력과 신청학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	17
Q70. 저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으로 신청하려는데요, 학교를 기입할 때 대학원까지 모두 기입해야 하나요? .....	17
Q71. 이수과목 성적은 영문으로 기입하나요? .....	17
Q72. 유사교과목 심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여러 과목 제출서류를 한 개 파일로 묶어서 제출해도 되나요? .....	17
Q73. 파일 업로드가 안 됩니다. ....	18
Q74.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제출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18	18
Q75. 자격신청 결과조회에서 상태가 '대기'로 되어 있어요. 신청이 된 게 맞나요? .. 18	18
Q76. 온라인으로 신청을 눌러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신청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18	18
Q77. 최종 제출한 신청서를 수정하고 싶어요. 수정할 수 없다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19
Q78. 자격인정 신청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19
Q79. 자격인정 신청서 제출 후 심의 진행 중인 사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19	19
Q80. 자격인정 확인서는 어디에서 인쇄할 수 있나요? .....	19
Q81. 자격인정 진위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19
 <b>VI. 기타사항</b> .....	 20
Q82.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자격인정을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20
Q83. 심의결과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20
Q84. 지난 회기 서류를 허위 및 수정하여 제출한 부분이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자격 인정 신청이 안 되나요? .....	20
Q85. 대학원(석, 박사기준)에서 음악재활영역 이수해야 되는 과목은 27학점을 충족해야 되나요? .....	21

# I. 공통사항

## Q1 (인정방법) 제공인력으로 자격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제공인력 자격인정방안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기준에 따른 법정교과목 이수 후 자격인정

2. 전환교육 수료 후 고시 이전의 민간자격증을 통한 자격인정

3. 전환교육 수료 후 고시 이전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경력 및 관련학과를 통한 자격인정

위 3가지 인정방법 중 해당하는 인정방법의 안내서를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 진행하십시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발달재활서비스 전환교육은 2021년 9월 12일 이후로 종료되었습니다. 전환교육 수료를 마친 대상자에 한하여 자격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정방법별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신청회기 인정방법 게시물에서 확인 바랍니다.

## Q2 저는 고시 이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증도, 발달재활서비스 경력도 없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새롭게 일할 수 있나요?

☞ 교과목이수 자격인정 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Q3 (신청방법) 자격인정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자격인정 신청은 인정방법(전환교육 수료 또는 교과목 이수)별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의 「교과목 이수 자격인정 절차」 및 「온라인 자격인정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우편, 방문 및 이메일 등으로 제출한 서류는 심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지정된 기간에 온라인으로 자격인정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Q4 자격인정 신청에서 최종 인정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 교과목이수 자격인정 절차 진행에 따라 약 4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신청인원 및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 회기의 교과목이수의 자세한 일정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Q5 교과목이수로 자격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시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제공영역의 법정교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자격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영역의 과목이수 및 실습요건을 충족하신 뒤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에 자격인정 심의를 신청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고시에 따른 법정교과목 구분을 기준으로 공통영역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전공영역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이수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수과목명이 법정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유사교과목 심의는 생략합니다. 이수과목명은 법정교과목과 다르나, 강의 내용이 법정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유사교과목 심의신청을 통해 법정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의 「제2장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Q6**

### **법정교과목의 일부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는 방법이 있나요?**

☞ 교과목 이수를 통해 인정 받고자 하는 제공영역의 과목을 기준으로 동등교육과정(①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 ② 대학원)에서 부족한 과목을 이수하거나, 유사교과목 심의로 이수과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 「발달재활서비스 교과목 이수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Q7**

### **법정교과목의 일부 과목을 추가 이수하고 싶지만 어디서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과목을 어디서 이수 할 수 있나요?**

☞ 과목이수는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야하며 본 자격관리사업단에선 특정 교육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유사교과목 인정과목 조회”에서 이전 회기 인정받은 교과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교과목 심의 신청 시 사전 인정된 교과목이라도 학교명, 학과, 교과목명, 연도가 일치해야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학과, 교과목명, 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사교과목 심의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Q8**

### **대학교과목과 대학원교과목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 법정교과목은 1과목당 3학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 기준: 공통영역 2과목 6학점, 전공영역 12과목 36학점(총 14과목 42학점)

2. 대학원 기준: 공통영역 1과목 3학점, 전공영역 6과목 18학점(총 7과목 21학점)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의 「발달재활서비스 교과목 이수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Q9**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학점이 3학점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2학점으로 이수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학점으로 과목을 이수한 경우 부족한 학점은 선택영역(공통필수는 공통선택에서 전공필수는 전공선택 영역에서)에서 각각 추가 이수 하십시오.

예를 들어 대학 기준으로 신청하실 때 2학점으로 14과목 이수 시 28학점으로 학점 이수 기준(42학점)을 미충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의 「발달재활서비스 교과목 이수 자격요건」을 확인하십시오.

**Q10**

**‘장애아동의 이해’ 를 학교에서 전공수업으로 이수했는데, 법정교과목에서는 공통영역의 필수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정이 안 되나요?**

☞ 아니오. 과목은 법정교과목의 구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학교의 과목 구분과 별개로, 법정교과목 기준으로 과목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Q11**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과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을 통합해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335호 제4조에 따라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제공영역별 교육과정 14과목 42학점 이상 이수한 자, 대학원에서 제공영역별 교육과정 7개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자격요건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1. 대학(4년제) 42학점: 인정
2. 대학(4년제) 일부학점 + 대학 일부학점(사이버대학 등): 동등교육기관 인정
3. 전문대학(2,3년제) 일부학점 + 대학 일부학점(4년제): 동등교육기관 인정
4. 대학원(석사) + 대학원(박사): 동등교육기관 인정
5. 대학(4년제)+ 대학원 일부학점: 동등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신청학력이 아닌 교육과정의 이수 과목은 불인정(대학교 기준 신청 시 대학원 과목 불인정, 반대로 대학원 기준 신청 시 대학교 과목 불인정)

---

**Q12 석사와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

☞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석사와 박사과정은 대학원 동등교육과정이므로 통합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13 필수로 표기된 과목은 모두 이수해야 하나요?**

---

☞ 네. 필수과목(공통필수/전공필수)은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필수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대체하실 수 없습니다.

---

**Q14 법정교과목 중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전환교육으로 채울 수 있나요?**

---

☞ 아니오, 전환교육으로 법정교과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교과목이수로 신청하려는 과목과 동등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만 인정합니다.

---

**Q15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원본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

☞ 아니오. 원본서류는 최종자격인정 결과발표 후 진위여부 확인 필요한 신청자에 한해 우편으로 받고 있습니다. 원본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최종자격심의 시 개별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원본서류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서류를 제출한 경우 모두 반송처리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Q16 학교 재학 중인데 이수과목 일부만 먼저 유사교과목 심의를 신청 할 수 있나요?**

---

☞ 아니오. 교과목이수 자격인정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이수 및 실습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자격인정 및 유사교과목 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Q17 대학원에서 법정교과목 이수를 다 하고 현재 수료 상태입니다.  
자격인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

☞ 네. 대학원을 수료한 경우라도, 인정 받고자하는 제공영역의 과목이수 및 실습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자격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Q18 신청서 1개로 여러 제공영역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오. 신청서는 제공영역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영역으로 자격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인정 받고자 하는 제공영역별로 신청서 기입 및 구비서류를 각각 제출하여 자격인정 신청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 **Q19 제공영역별로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나요?**

☞ 네. 자격인정은 9개 제공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공영역별로 제시하는 법정교과목 및 실습 요건을 충족하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시로 감각발달재활영역에서 인정 받은 뒤, 행동재활영역에서도 활동을 원하는 경우 행동재활영역으로 자격인정을 각각 진행하십시오.

## **Q20 전화상담은 자격인정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나요?**

☞ 아니오. 전화상담은 평일 9 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대표번호 “1544-6065”로 전화연결 시 상담이 가능합니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자격인정 신청 기간 동안은 해당 자격인정 신청에 관한 상담만 진행되오니 해당하지 않는 상담 내용은 1:1문의를 이용하십시오(교과목이수 신청기간에 전환교육 전화 문의 불가).

신청기간에는 전화 상담이 폭증하오니, 상담 전 자격인정 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개별적 상황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를 중심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부서로 연락 시 상담이 불가합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 > 열린광장 > 1:1문의를 이용하십시오.

## **Q21 홈페이지 1:1문의에 남긴 제 문의가 '처리완료'로 되어 있는데 답변이 안보여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 진행상태가 ‘처리완료’로 되었다면 답변이 완료된 것으로, 귀하게서 문의하셨던 질문의 ‘제목’으로 검색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Q22 1차 서류 검토 결과 인정되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럼 자격인정이 된 건가요?**

☞ 아니오. 1차 서류 검토 결과 통보는 개별 신청서와 제출서류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결과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1차 서류 검토 통과자에 한하여 2차 심의가 진행됩니다.

2차 심의는 제공영역별 분과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이수과목 확인, 유사교과목 인정여부, 실습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 후에 최종자격인정 결과를 안내합니다.

## II. 제출서류

### Q23 교과목이수 자격인정에 필요한 서류로 어떤 것이 있나요?

☞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의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제출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 Q24 자격인정신청서, 유사교과목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는 어디에서 다운받나요?

☞ 기존의 자격인정신청서, 유사교과목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는 모두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Q25 제출해야 할 서류를 발급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6개월 이내 발급에 해당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네. 원칙적으로 모든 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발급일이 6개월을 초과한 서류로 온라인 심의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서류를 재발급하여 6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실습평가서와 같이 원본을 학교나 발급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나 실습확인서, 경력증명서와 같이 매번 새로 발급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서류여도 제출 가능합니다.

### Q26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한 원본서류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 네. 원본서류를 꼭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진위여부 확인 필요 시 원본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심의를 진행한 서류와 동일한지 진위여부 확인 후 자격인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Q27 실습확인서의 내용은 모두 기입해야 하나요?

☞ 네. 모두 기입하여야 합니다. 일부 내용 누락 시 서류미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에서 실습확인서 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Q28**

**졸업한지 오래되어 실습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꼭 실습확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 교과목 이수 자격인정 대상자 중 고시 이전(2018.9.1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실습확인서를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의 「실습확인서 대체 방안」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실습확인서 대체는 발달재활서비스 경력에 한하여 가능하며 최종 인정여부는 분과의 심의사항임

**Q29**

**졸업한 지 오래되어 실습기관이 폐쇄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의 「실습확인서 관련 유의사항」 또는 「실습확인서 대체 방안」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Q30**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생 등으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후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를 기준으로 이수과목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학점인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과목의 성적증명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3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 신청 중에 있는데, 자격인정 신청  
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과목을 이수한 교육기관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시고, 원본서류 제출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자격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Q32**

**대학교를 편입하였는데,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

☞ 편입 전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편입한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할 경우 인정가능하며, 편입 학교 성적증명서와 함께 편입 전 학교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종학력증명서의 경우 졸업 전의 경우라면 학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Q33

### 졸업한 지 오래 되어 강의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대체 강의 계획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 아니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기 전(2017년 이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시한 교과목이 운영되지 않은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유사교과목 심의는 추가의 이수과정 없이 귀하가 이수한 과목 안에서 유사한 과목이 있으면 확인·인정하여 별도의 추가과정 이수 없이 제공인력으로서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유사교과목 신청의 경우 이수한 교과목의 강의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영역의 발달재활서비스 최종교육과정 60%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에 유사여부를 심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에 유사교과목에 대한 심의는 신청자가 이수한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정리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Q34

### 신청하고자 하는 영역의 교과목을 전부 이수하였지만 아직 졸업 전입니다. 최종학력증명서는 어떻게 내면 될까요?

☞ 신청하고자 하는 영역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자격인정조건에 충족될 경우지만 해당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졸업 전의 경우 최종학력증명서는 ‘1) 학부졸업 시 졸업예정증명서 2) 석·박사 졸업 시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명서, 학부졸업증명서’ 구비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단, 성적증명서 상 해당 교과목에 대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수확인증, 인터넷 캡쳐화면 등 증빙 불가

Q35

### 교과목 이수는 다 하였으나 성적 처리가 되지 않아 성적증명서 상 표기 되지 않습니다. 다음 회기에 신청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성적증명서 상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증빙이 되어야 하지만 성적처리기간 등으로 인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첨부서류(원본대조필, 해당 사무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유 등이 포함된 공문 등)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종 심의까지 통과된 경우 원본서류를 우편 상으로 제출하여 진위여부 확인 후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III. 실습

#### Q36 인정 받고자 하는 제공영역의 실습기준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실습기준은 제공영역별로 다릅니다. 아래 안내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의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실습 기준 및 확인서」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홈페이지 메인 > 인정기준 > 영역별 제공인력 자격기준

#### Q37 실습기준에서 장애아동의 범주는 어떻게 되나요?

☞ 실습확인서에 명시된 장애아동(만 0세 - 18세미만)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아동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 특수교육 대상 아동 등

#### Q38 제가 진행한 실습이 인정되는 지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오. 실습의 인정여부는 자격인정 심의를 진행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실습 외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자격인정을 신청하십시오. 자격인정 신청 후 제공영역별 분과위원회 및 자격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습을 포함하여 최종 자격인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39 졸업 후 실습도 인정 되나요?

☞ 아니오. 졸업 후 실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습생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한 내용은 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습은 교육과정 이수 과정, 즉 재학 중 진행하여 실습기관 및 학교로부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Q40 봉사시간도 실습으로 인정되나요?

☞ 아니오. 봉사시간은 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습은 재학 중 이수하는 과목 안에서 이루어져 하며 실습내용 확인서와 제출 서류를 보시면 학교차원에서 실습에 대한 수업과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음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습지도자와 실습지도교수가 실습을 지도한 내용과 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Q41 실습요건을 충족하는 실습기관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 아니오. 실습기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영역별 실습요건을 확인하신 뒤, 실습기관에서 제공영역의 실습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소속 학교-학과, 제공영역 관련 학회 및 협회 등에 문의하십시오.

#### **Q42 실습지도자(슈퍼바이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홈페이지를 통해 인정 받고자 하는 제공영역의 실습지도자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습에 대한 관리는 학교의 역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교-학과, 제공영역 관련 학회 및 협회 등에 문의하십시오.

#### **Q43 미술재활영역 관련하여 실습을 하려는 기관의 실습 담당자가 미술 재활관련 자격증은 있지만, 슈퍼바이저 자격이 없습니다. 실습이 가능한 기관인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단, 실습 담당자는 반드시 미술재활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미술심리재활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 초기 시행 과정에서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인정을 내주기 위해 슈퍼바이저 자격기준은 자격증 발급기관의 지도자 기준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임상실습 담당자가 미술심리재활 관련 자격을 소지하였지만, 지도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습 담당교수의 발급기관의 자격명을 확인하여 지도자 요건을 충족하면 실습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슈퍼바이저 자격에 대한 인정여부는 제공영역별 분과위원회 검토를 통해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는 사안이므로 심의 전에 알 수 없습니다.

#### **Q44 놀이심리재활영역 관련하여 실습확인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놀이심리재활 실습확인서 작성 시 총 140시간 안에 장애아동 대상 1:1 개별 임상실습 40시간 이상(반드시 10회기 이상 진행된 2사례 포함), 관찰실습 40시간 이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하며 ‘홈페이지 > 열린광장 > 자료실 > [교과목 이수자] 놀이심리재활 실습확인서 양식 및 작성 예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45**

### 실습을 진행한 기관이 여러 곳인 경우 실습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 실습기관이 여러 곳이나 현장실습확인서 상 기관 입력칸이 한 칸만 있을 경우 실습을 진행한 기관의 실습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실습은 졸업 전 교과과정 내에서 진행하여 실습지도를 받은 경우만 인정 가능하며 영역별 실습기준 및 양식이 다르므로 필히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의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실습 기준 및 확인서’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하는 실습에 대한 최종인정 여부는 분과의 심의사항입니다.

**Q46**

### 학교 내에서 간접실습을 진행하였을 경우 실습확인서의 기관명을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 실습확인서 상 기관명에 간접실습을 진행한 학교명을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간접실습이 진행되었을 경우 사유가 포함된 학과장 명의의 공문, 강의계획서(실습 운영 계획서), 코로나19에 따른 실습 운영지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각 영역별로 간접실습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의 48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IV. 유사교과목

### Q47 유사교과목 심의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 유사교과목 심의 접수기간은 교과목이수 자격인정 신청기간과 동일합니다.

교과목이수 자격인정 신청과정에서 유사교과목 심의 신청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신청 전 신청회기 안내문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서류를 과목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교과목 심의는 교과목이수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과목의 인정여부도 교과목이수 최종자격인정 심의 후 함께 발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Q48 이수교과목명이 법정교과목과 한 글자가 달라요. 유사교과목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네. 띄어쓰기를 제외한 부분에서 법정교과목과 이수교과목의 명칭이 다를 경우 유사교과목 심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 법정교과목 – ‘장애아동의 이해’, 이수교과목 – ‘장애아동 이해’ => 유사교과목 심의 필요
- 법정교과목 – ‘장애아동의 이해’, 이수교과목 – ‘장애아동의이해’ => 유사교과목 심의 생략(띄어쓰기만 다른 경우)

### Q49 유사교과목 심의 신청은 개인이 신청해야하나요? 학과에서 단체로 신청할 수는 없나요?

☞ 네. 자격인정은 제공인력으로 활동을 원하는 개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회기 심의가 이루어진 과목은 강의계획서 제출 및 심의가 생략됩니다(홈페이지 > 유사교과목 인정 과목 조회에서 이전 회기 심의과목 확인).

### Q50 유사교과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전에 제가 이수한 과목이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정교과목 교수요목과 ‘교육과정 일치도가 60%’ 가 넘을 시 유사교과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자료실 > ‘[교육과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을 위한 이수 과목명/ 최종교육과정(법정과목 강의계획서, 수정)’에서 교수요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사교과목 신청과목의 인정여부는 유사교과목 심의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1	<b>유사교과목 인정과목 조회에서 제가 졸업한 학교가 검색이 안돼요. (또는 제가 졸업한 학교는 있는데, 이수한 교과목명이 없습니다.)</b>
-----	---

☞ 홈페이지 유사교과목 인정과목 조회에서 확인되는 과목은 이전 회기 교과목이수 신청과정에서 유사교과목 심의가 진행된 과목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과목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교과목이수자 신청기간에 유사교과목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목이 검색되더라도, 본인이 이수한 과목과 ‘학교, 학과, 교과목명, 연도’ 가 일치하지 않을 시 심의를 신청하십시오.

Q52	<b>서로 다른 두 개의 이수과목을 합쳐서 한 개의 법정교과목으로 유사교과목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 개 이수과목을 여러 개 법정교과목으로 유사교과목 신청이 가능한가요?</b>
-----	--

☞ 아니오. 서로 다른 두 개 이수과목을 통합신청이 불가능하나, 과목이 학기로 나누어져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EX. 발달재활실습 -> 발달재활실습1, 발달재활실습2)  
또한 한 개 이수과목을 여러 개 법정교과목으로 신청 시 심의가 중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의 ‘유사교과목 불인정 사유’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Q53	<b>(위 질문에 해당) 한 과목을 2학기로 나눠 들어 신청 시 성적 기입란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b>
-----	--

☞ ‘A+/A+’ 와 같이 6자리를 넘어가는 경우 시스템 상 입력이 불가합니다. +, -의 경우 제외하여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른 두 개 이수과목을 통합신청 시 과목이 학기로 나누어져있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54	<b>이전 회기 유사교과목 심의 결과 인정되지 않은 과목을 다음 회기에 재신청할 수 있을까요?</b>
-----	--

☞ 아니오. 이전 회기 심의 결과 불인정된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Q55	<b>이전 회기에 유사교과목을 신청한 과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과목을 심의신청한 과목과 다른 과목으로 바꿔서 재신청할 수 있나요?</b>
-----	--

☞ 네. 다른 이수과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이수교과목과 법정교과목 교수요목의 일치도가 60% 이상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Q56 강의계획서에 원본대조필을 받으라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 발급기관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사실임을 증빙하는 절차로 발급기관에서 사실임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유사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인정 과목을 제외한 모든 강의계획서에 원본대조필이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 평생교육기관 (예: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도 동일 서식이며, 학과장에 준하는 원장 또는 담당자의 도장을 포함하여 제출(안내문 p56 참조)

※ 학과 또는 교무처를 통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 총장 직인을 발급받아 진행

## **Q57 원본대조필은 어떻게 증빙할 수 있나요?**

☞ 원본대조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실습기관 폐쇄 관련 : p. 40, 강의계획서 관련 p. 54

## **Q58 유사교과목 인정과목 조회에서 조회되었던 과목인데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안돼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자격인정 진행 과정에서 다수 허위 서류가 발견되어, 최종 교육과정 공표 전인 2017년도 이전까지의 과목들 중, 심의가 진행되어 인정여부가 안내되었던 과목들은 ‘5회 자격인정’을 기점으로, 유사교과목 심의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유사교과목 심의를 신청하십시오.

Q59	유사교과목 인정과목 조회에서 인정된 과목은 유사교과목 심의 신청을 안해도 되나요?
-----	---

☞ **아니오.** 교과목 이수 자격인정 신청서 작성 시 법정교과목명과 성적증명서 상 교과목명이다를 경우 유사교과목 심의요청은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사교과목 심의요청 ‘예’를 누르시고 ‘심의대상교과목명’을 작성한 후 다음 신청화면에서 강의계획서 대신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Q60	법정교과목에 제시된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통필수, 공통선택의 과목 구분이 제가 이수한 과목의 구분과 다릅니다. 관계없이 인정 가능한가요?
-----	---

☞ 네. 상관 없습니다. 법정교과목은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통필수, 공통선택의 구분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구분한 것이지 학교 내에서 이수한 과목의 구분이 법정교과목의 구분과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Q61	대학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성적증명서 상 이수한 과목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증빙하면 될까요?
-----	---

☞ 사전 해당과정을 자격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 인정받아 운영한 경우에 한하여 자격인정 신청 시 학교 및 학과로부터 발급된 수료증 등을 성적증명서 란에 첨부하여 증빙하시길 바랍니다.

Q62	대학원에서 법정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일부 과목은 대학원 이수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과목으로 이수하였습니다. 이 과목도 대학원 이수과목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 네, 가능합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자격인정에 해당하는 법정교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증명서에 이수내용이(과목, 학점, 성적 등) 확인 가능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V. 온라인 신청

반드시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 필독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Q63 핸드폰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아니오. 반드시 PC 컴퓨터를 사용하여 신청하십시오. 익스플로러보다 ‘크롬’에 적합하오니, 되도록 ‘크롬’을 사용하여 자격인정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신청 진행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Q64 자격인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인정 신청기간이 아닙니다.’라고 뜹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은, 인정방법별로 정해진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기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Q65 신청을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은 어떻게 하나요?

☞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민간 아이핀 인정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 Q66 민간 아이핀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의 ‘제3장. 온라인 자격인정 신청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 Q67 민간 아이핀 로그인이 안 됩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의 ‘제3장. 온라인 자격인정 신청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의는 민간 아이핀 관리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민간 아이핀 문의

- 홈페이지 문의 : 민간 아이핀(<http://www.ok-name.co.kr>) > 고객센터

---

**Q68** 작년에 민간 아이핀을 발급받았는데, 아이디가 없다고 합니다.

☞ “기존 발급 아이디”로 아이핀을 재발급해주십시오. 민간 아이핀 로그인 > 신규발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Q69** 자격인정 신청란의 최종학력과 신청학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교과목이수의 경우 이수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과목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에 기입한 과목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신청학력을 기입하시오. 아래는 예시입니다.

- 석사 졸업상태에서 대학 기준으로 자격인정 신청

=> 최종학력(석사) : 발달대학교 발달대학원 / 신청학력(대학) : 발달대학교

---

**Q70** 저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으로 신청하려는데요, 학교를 기입할 때 대학원까지 모두 기입해야 하나요?

☞ 네. 대학원의 경우 자격인정 신청서 상단 ‘학교명’에 학교 및 대학원명을 모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발달대학교 발달대학원

※ 학교명에 대학원 미기입한 경우 서류 오기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유사교과목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대상 교과목별 이수학교명에도 정확하게 대학과 대학원명을 같이 표기하여 주십시오.

---

**Q71** 이수과목 성적은 영문으로 기입하나요?

☞ 숫자로 기입해도 무관하나, 되도록 대문자 영문으로 적어주십시오(A, B-, C+, P 등). 이때 F, NP과목은 이수를 인정하지 않으니 기입과목에서 제외하여 주십시오.

---

**Q72** 유사교과목 심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여러 과목 제출서류를 한 개 파일로 묶어서 제출해도 되나요?

☞ 아니오. 구비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심의하는 과목 한 개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하십시오.

### Q73 파일 업로드가 안 됩니다.

☞ 구비서류는 지정된 확장자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확장자로 제출서류를 등록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확장자 확인 방법 : 제출서류 문서명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린 뒤 마우스 우클릭 > 속성 > 새 창의 “파일형식” 확인

### Q74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제출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메인 > 자격신청 결과조회(주황색 네모박스) > 신청회기 ‘일정명’ 클릭

### Q75

자격신청 결과조회에서 상태가 ‘대기’로 되어 있어요.  
신청이 된 게 맞나요?

☞ 아니오. 최종 신청 시 상태가 ‘신청완료’로 됩니다. 대기로 표시된다면, “홈페이지 메인 > 자격신청 결과조회(주황색 네모박스)”에서 ‘신청회기’의 ‘일정명’을 클릭하여 ‘신청’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 Q76

온라인으로 신청을 눌러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신청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 아니오. **최종 서류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신청 이후 수정 및 동일 영역 신청서 재제출이 불가한 이유는 관리자가 인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임의 수정 할 수 없으며, 임의 조작·변경을 통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안 조치입니다. 따라서 최종 신청 진행 전 반드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안내문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의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주요 미인정 사유는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의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관련 미인정 사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 Q77 최종 제출한 신청서를 수정하고 싶어요. 수정할 수 없다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 아니오. 신청서는 제공영역별로 한 번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회기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신청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신청을 진행한 경우,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됩니다.

---

## Q78 자격인정 신청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메인 > 자격신청 결과조회(주황색 네모박스) > 신청회기 ‘일정명’ 클릭

---

## Q79 자격인정 신청서 제출 후 심의 진행 중인 사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자격인정 심의 과정은 신청서 제출 후 ‘신청완료 > 접수 > 1차 서류 검토 > 2차 심의 및 유사교과목 심의 >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심의 현황은 홈페이지 메인 > 자격신청 결과조회(주황색 네모박스) > 신청회기 ‘상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차 심의 완료 및 최종 심의 진행 시 문자발송이 진행됩니다.

---

## Q80 자격인정 확인서는 어디에서 출력할 수 있나요?

---

☞ 자격인정 확인서는 최종심의 통과 시 인쇄가 가능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용이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 자격확인서 출력 경로 : 홈페이지 메인 > 자격신청 결과조회(주황색 네모박스) > 신청회기 ‘일정명’ 클릭

※ 고시 개정으로 인하여 자격인정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인터넷을 통한 발급만 가능합니다.

---

## Q81 자격인정 진위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본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http://broso.or.kr/cert>) 우측 빠른 서비스 > 자격인정 진위확인”에서 해당 정보를 기입하실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VI. 기타사항

### Q82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자격인정을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외국대학 학력인정확인은 해당 국가기관을 통해 정규학교 여부에 대한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등록자의 국가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확인서를 제출
- 2)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 등은 해당국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해당 국교육 법령에 의거한 정규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학력인정확인서를 받아 제출
- 3) 아포스티유 및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외국에서 과목을 이수했다면 유사교과목 심의를 신청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셔야 하며, 이때 강의계획서의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의 「기타 안내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Q83 심의결과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 오류로 인해 “자격인정 결과 미인정”, “유사교과목 심의 결과 불인정” 되어, 해당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이의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거서류 제출과 함께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유의사항 > ‘자격인정 결과 및 유사교과목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관련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Q84 지난 회기 서류를 허위 및 수정하여 제출한 부분이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자격인정 신청이 안 되나요?

☞ 문서의 위조, 허위 작성 등 발견 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개인 위변조: 개인 경고문 공문 통보, 해당 대학에 관련 사실 공문 통보
- 기관 위변조: 해당 대학 경고문 공문 통보, 개인 관련 사실 공문 통보
- 개인 및 기관 2회 위변조 확인 시 해당 학과 또는 개인 인정 신청 1년 정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의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유의사항」을 확인하십시오.

Q85

### 대학원(석, 박사기준)에서 음악재활영역 이수해야 되는 과목은 27학점을 충족해야되나요?

☞ 아니오. 대학원에서 영역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해당될 경우 음악재활영역 또한 공통영역 최소 3학점 + 전공영역 최소 18학점 이수하여 7과목 21학점 이상 충족될 경우 자격인정신청 자격에 충족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 > 나의 자격기준 확인’에 작성되어있는 이수 학점과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상 추후 수정될 예정이며 안내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서」